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체계적인 국방 정보·방첩·보안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 및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또는 5등급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국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29. ~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을 “법무관리관, 감사관 및 정보보안정책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정보”를 “정책정보”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보안정책관) ① 정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보안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정보·방첩·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국방정보본부·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감독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의 선발·운영 정책의 수립·발전
4. 국방분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기상정보 정책의 수립
5. 군의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 수립 및 준법감찰기관의 운영 지원
6.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조정 및 대외협력
7. 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대외협력

8. 군사보안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9. 국방분야 암호정책의 수립·조정 및 조정·통제
10. 군사비밀 분류·관리·공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1.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관련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49명을”을 “52명을”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둔다.

②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갈등관리 업무
2. 핵추진잠수함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3. 핵추진잠수함 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4. 핵추진잠수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업무
5. 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 협력 업무
6.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 안전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7.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연구·발전

④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3의 정원 중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87”을 “713”으로, 일반직 계 “679”를 “705”로, 고위공무원단 “18”을 “19”로, 3급 또는 4급 이하 “655”를 “680”으로 한다.

별표 2의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존속기한: 2028년 8월 14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력정책국장 및 국방정보본부장”을 “정보보안정책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7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국방인공지능기획국 1개 과	7명
정보보안정책관	1명
정보보안정책관 4개 담당관	24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 ②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관 밑에 국방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 정실장, <u>법무관리관 및 감사관</u> 각 1명을 둔다.	③ ----- ----- ----- ----- <u>법무관리관, 감사관 및</u> <u>정보보안정책관</u> ----- -----.
제5조(국방보좌관) ① (생 략)	제5조(국방보좌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국방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방관련 <u>정보</u> 의 수집 · 분석 · 전파 및 공유	6. ----- <u>정책정보</u> -----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9조의2(정보보안정책관) ① 정</u> <u>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u> <u>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u> <u>한다.</u>
	<u>② 정보보안정책관은 다음 사항</u> <u>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u>
	1. <u>국방분야 정보 · 방첩 · 보안</u> <u>정책의 수립 및 조정 · 통제</u>

2. 국방정보본부 · 국방방첩본부
· 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
도 · 감독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
2조에 따른 국군장교의 선발
· 운영 정책의 수립 · 발전
4. 국방분야 지리공간정보(영상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기상정보 정책의 수립
5. 군의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
수립 및 준법감찰기관의 운영
지원
6.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
립 · 조정 및 대외협력
7. 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 및 대외협
력
8. 군사보안 발전을 위한 법령
· 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9. 국방분야 암호정책의 수립 ·
조정 및 조정 · 통제
10. 군사비밀 분류 · 관리 · 공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1.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관련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국방정책실) ①·② (생략)	제12조(국방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u>	<u><삭 제></u>
8. ~ 41. (생략)	8. ~ 41. (현행과 같음)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49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② ----- ----- -----. ----- ----- <u>52명</u> 을----- ----- ----- ----- ----- ----- ----- -----

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둔다.

②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갈등관리 업무
2. 핵추진잠수함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3. 핵추진잠수함 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4. 핵추진잠수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업무
5. 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 협력 업무

6.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
안전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7.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연구·발전

④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
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3의 정원 중 1명(5급 또
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
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
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
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
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
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7

<u>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 방부령으로 정한다.</u>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87</u>	<u>713</u>	+26
·	·	·	
·	·	·	
일반직 계	<u>679</u>	<u>705</u>	+26
고위공무원단	<u>18</u>	<u>19</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55</u>	<u>680</u>	+2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6